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세무2과-2686
등록일자	2016.1.22.
결 재 일 자	2016.1.2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지방소득세4팀장	세무2과장	기획경제국장		
최필순	박종수	김광수	01/22 김용운		
	지방소득세3팀	장 <b>김태영</b>			
협조 자	지방소득세2팀	장 <b>윤미라</b>			
	지방소득세1팀	장 이덕배	지방소	득세5팀장	표지영

#### -기존의 관행적 부과체계 혁신을 위한-

# 임대사업자 주민세(균등분) 사전조사 계획

□ <b>예상효과</b> : 2016년 임대사업자 주민세(균등분) 2,118명132백만원
세부담 경감 예상
□ 사업개요
○ 사전조사기간 : 2016. 1. 1. ~ 7. 31.(7개월간)
○ 조사내용 : 임대사업자의 인적·물적설비 유무
○ 조사대상 : 2015년 주민세(개인사업자균등분) 임대사업자 부과된
10,540건 중 <b>2,211건</b>

- 조사방법
  - 1차(인적설비확인)
  - 2차(물적설비확인)
  - 3차(현장 방문 조사)
- □ 기대효과
  - 조사결과를 토대로 市, 행자부에 법개정 주도적 역할가능
  -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존하던 업무방식 개선으로 공정과세 확립
  -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로 민원발생요인 사전차단, 청렴도제고

2016. 1. 22.

**강 남 구** 

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▶ 지방세법 제74조 ~ 제79조(주민세 균등분) ▶ 지방세기본법 제136조(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)				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▶ 추진경위: 주민세(개인사업자균등분)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시·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이며, 별도의사무소를 두지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사전조사하여 과세 제외함으로써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신뢰받는 세무행정 수립의 전기를마련하고자 함				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▶ 비예산사항임				
수 혜 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▶ 임대사업자 2,118명 132백만원 市세부담 경감 예상				
분 야 별 검토사항 〔계속:〕 〔신규:〕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				
타 기관 사 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▶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시도				
전 문 가 자 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▶ 해당사항 없음				

#### - 기존의 관행적 부과체계 혁신을 위한 -

## 임대사업자 주민세(균등분) 사전조사 계획

지금까지 세무서통보 과세자료에만 의존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민세(균등분) 부과대상 중 인적·물적설비가 없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과세 제외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중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기존의 단순 부과체계를 타파,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신뢰받는 세무행정 수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

#### Ⅱ 예상 효과

- ⇒ 2016년 임대사업자 주민세(균등분) 2,118명 132백만원 세부담 경감 예상
  - ※ 2015년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부과 총 40,115건 2,507백만원
    - 임대사업자균등분 주민세 10,540건 659백만원(26.3% 점유)

### Ⅱ \ 사업 개요

- □ 사전조사 기간 : 2016. 1. 1.~7. 31.(7개월간)
- □ 조사내용 : 전년도 부가가치세과표 4,800만원이상 임대사업자의 인적·물적

설비 유무

- 조사대상 : 2015년 주민세(개인사업자균등분) 임대사업자 부과분 10,540건
- □ 조사방법
  - O 1차 (인적설비 확인) : 지방소득세(특별징수) 자료 활용
  - O 2차 (물적설비 확인) : 사업자등록자료 전수조사 별도의 사업장 여부 파악
  - O 3차 (현장 방문조사) : 1,2차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실시
    - ⇒ 조사결과 인적·물적설비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면 2016년 국세청 과세자료 중 부과제외 대상으로 전산처리, 주민세(개인사업자균등분)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

### Ⅲ 세부추진계획

- □ 조사대상 자료
  - 2015년 임대사업자부과 10,540건
    - 주택임대 871건상가임대 8,846건(집합건물 1,340건)
    - 주택·상가임대 73건 부동산 외 기타임대 730건
    - ⇒ **사전조사대상** : **총2,211명** 주택임대(871건),상가임대 중 집합건물(1,340건)

	인적설비	유무 조사 :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자료대사 매치
	물적설비	유무 조사 : 사업자등록원부 조회를 통한 임대사업 외 타업종 여부확인
0	집합건물	2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 : 그 중 한호를 물적설비로 이용하는지 여부 조사
0	집합건물	[호를 임대한 경우 : 주택임대사업자등록망의 전국자료 조회로 타시도물건
		임대여부 파악

### □ 현장조사

- 전산자료 조사 후 추가확인 필요시 현장방문 전수조사
- O 임대사업자(납세자)와 유선 확인 조사 병행

## IV 기대효과

□ 조/	사결과를 토대로	市,행자부	등을 통한	세제개편 법	<b>벜개정 등</b> 주	도적	역할기능
□ 국사	세청 통보자료에	의존하던	업무방식	개선으로 공	공정과세 확	립	
□ 과	네자료의 철저한	조사로 민	원발생 요연	· 사전차단,	, 신뢰세정	및 청	렴도제고

## Ⅴ 월별 추진계획

월 별	세 부 추 진 계 획	비고		
1월	▶ 임대사업자 조사계획 수립			
2월	▶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료 활용하여 인적설비 유무 확인			
3월	▶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조회로 타시도 임대물건 보유여부 확인			
4월~5월	▶ 현장조사 실시			
6월~7월	▶ 2016년 국세청자료 중 과세제외 대상 자료 전산 처리			
8월	▶ 정기분 부과 관련 민원발생시 건별 현장 확인하여 즉시 처리			
9월~12월	<ul><li>▶ 사후관리</li><li>- 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련법 개정등 지속 추진</li></ul>			